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
[개 요]

□ 관련근거 :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7조 및 시행령 제10조

○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%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,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*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: 물품 + 노무용역 등 서비스 (단, 공사제외)

□ 주요 정의

○ 중증장애인 : **「장애인복지법」**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

1. 지적장애인·자폐성장애인·정신장애인·호흡기장애인·언어장애인
2.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·심장장애인
3.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·지체장애인·청각장애인·신장장애인·간질장애인·간장애인·안면장애인·장루·요루장애인
4.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
5.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

○ **중증장애인생산품 : 「장애인복지법」**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

[구매실적]

(단위 : 백만원)

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137	187	337	393